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2. 6	. / (총 32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양 정 석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송 은 철	전 화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1720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이 성 경		044-202-17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환자도 크게 늘어나 중증환자 병상부족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 중수본이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도** 권역별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 □ 정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의료대응 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무중상·경증 환자를 자가치료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방대본은 전문가들과 **지자체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가 치료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2주 이상 총력을 다했음에도 이번 감염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오늘 또다시 단계 격상조치를 했지만, △수능 후 학생들의 이완,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한 이동량 증가 △연말연시 모임 △겨울철 이라는 계절적 위험요인 등 방역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 이제까지 여러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 방역에 최대 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시 한번 전국의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여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는 수도권 2.5단계 등 격상된 거리두기 조치가 추가 연장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 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한 주간**(11.30.~12.6.)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375명이다. 지난 목요일부터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 오늘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 기준을 초과하였다.
-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하였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 한편,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 최근 1주가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이다.
 - ※ **< 거리두기 1.5 → 2단계 격상 기준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시
 - ① 1.5단계 실시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 유행 권역 2단계
 - ②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유행 권역 2단계
 - ③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2단계
 - ※ <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특히, 수도권에서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 함에 따라 신규 환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코로나19 유행 이래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정부는 지난 11월 19일에 **수도권 1.5단계**, 24일에 **수도권 2단계**, 12월 1일에 2단계 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례로 시행하였 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 비수도권도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어느 한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의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지역에서 확진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다만, 경남권은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한 반면, 대구·경북권 및 제주권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 지난 12월 1일 모든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산·광주광역시 및 1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 권역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11.30~12.6) >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간 하루 평균	514.4	374.9	40	25.6	14.3	50.3	8.6	0.9
1.5단계 기준	-	100	30	30	30	30	10	10
2단계 기준	300	200	60	60	60	60	20	20

- □ 그간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1.5 단계 상향 이후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감소하였으나, 환자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수도권**의 지난 **주말 휴대폰 이동량**(11.28.~11.29.)은 거리 두기 조정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22.9% 감소**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량**도 같은 기간 대비 **26.2%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중 휴대폰 이동량**(12.1.)도 2주 전(11.17.) 대비 **13.2%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에 주말 휴대폰 이동량이 22.9%, 주중 휴대폰 이동량이 13.7%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거리두기 조정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주말 이동량 분석 >

구분	1주차(11.2	21.~11.22.)	2주차(11.28.~11.29.)		
TE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휴대폰	▲10.5%	▲11.6%	▲22.9%	▲20.8%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11.6%	-	▲26.2%	-	
카드매출	▲ 7.4%	▲10.4%	▲13.4%	▲11.4%	











평생친구

- 이러한 이동량 감소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1.5단계는 12월 초, 2단계는 이번 주말(12.6.~12.7.)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 했으나, 거리 두기를 통한 환자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먼저, 8월 유행 시에는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사랑 제일교회 등 감염 중심 집단에 대한 선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중심 집단 없이 일상적인 감염이 확산을 주도하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 및 격리가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생활방역위원회 소통 분과(12.4.)에서는 현재 확산을 견인하고 있는 청·장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위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로서 국민들의 거리 두기 실천을 보다 독려하지 않으면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 60대 이상 **고령충 확진자의 비율은 20% 내외**이나 **요양원에서의**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며칠 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 전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는 12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전망이다.

< 60대 이상 환자 비율 및 위중증 환자 수 >

구	분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126
확진제	다 수	271	349	382	581	555	503	450	438	451	511	540	629	583	631
60세 이상	수	46	75	80	109	121		85	109	84	97	108	168	171	221
이상	%		21.5		18.8		25.4		24.9		19	20	26.7	29.3	35
위중	증증	79	79	81	78	77	77	76	76	97	101	117	116	121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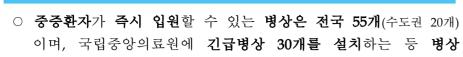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러나 **현재의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주일 내외 이후 에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추가적인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병상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 운영 중인 17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274병상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늘려 나갈 계획이다.
-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 센터의 가동률은 70% 정도로, 다음 주까지 생활치료센터 8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 * 경북권 중수본 지정 센터 1개소, 지자체 지정 센터 7개소(1천여 명 규모)

<중증도별 병상 현황(12.5. 기준)>

100-E 00 EB(1251-12)											
		경증			중등증			위중증			
구분	생	활치료센	터	감임	병병 전담병	병원	중환자 병상				
	보유	입소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전국	4,049	2,582	1,467	4,637	3,139	1,498	550	395	55		
수도권	3,253	2,131	1,122	2,147	1,657	490	335	248	20		
강원	40	34	6	221	107	114	16	9	5		
충청권	502	320	182	507	320	187	39	29	2		
호남권	84	50	34	602	375	227	26	18	2		
경북권	-	-	-	402	198	204	49	34	6		
경남권	170	47	123	575	457	118	71	49	14		
제주	-	-	-	183	25	158	14	8	6		

* 가용병상은 인력·장비 등이 완비되어 확진자가 당일 입원 가능한 병상임











-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 모두가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수도권 지자체** 및 **대다수의 부처,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통적 으로 **수도권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 수도권의 조치와의 통일성· 조화, 전국 일일 생활권으로 인한 감염 전파 우려 등을 감안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2단계 상향을 제안한 가운데, **일부 의료계 위원**들은 **전국 2.5단계의 통일적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 한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 두기 외에도 **병상 및 생활치료** 센터 등 의료체계 여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선제적 진단검사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 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 이에 따라 중대본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 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
- 또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회복하기 위해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 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는 등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
-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다.
- □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첫째,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평생친구

집합금지한다.

-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다.
-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 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 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5단계 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구분	2단계	2.5단계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	달만 허용
다중이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u>집합금지</u>
시설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u>중단 추가(</u> 300㎡ 이상 종합소매업)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활동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등교 밀집도 <u>1/3 준수</u>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 (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 □ 비수도권도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전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권역을 12월 8일(화)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홍시설 5종*은 집합금지한다.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평생친구

-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 비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단계 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구분	1.5단계	2단계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다중이용	의무화(50m² 이상)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		
시설	의구획(50배 약경)	배달만 허용		
시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섭취 금지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활동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 o	▶등교 밀집도 2/3 준수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 0	조정 가능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 활동 전면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백신이 상용 화되기 정의 마지막 고비라며,
-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되어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실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
-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 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중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 □ 특히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 임을 강조하였다.
-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의 착석을 제한한 것은 그 이전 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며,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 같은 맥락에서 **카페에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 것도 **커피·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대화하는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카페가 아닌 식당 등 다른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안전 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 □ 중대본은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은 외출과 모임을 최소화하여 사람 가 접촉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을 가곡히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엄중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 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다.
 - 지난 한 주(11.29.~12.5.)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87.9명**으로 그 전 주간(11.22.~11.28.)의 **400.1명**에 비해 **87.8명 증가**하였다.
 - 지난 목요일(12.3.)부터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40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6.3명으로 그 전 주간 (11.22.~11.28.)의 **85.9명**에 비해 **30.4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1.8.~11.14.	11.15.~11.21.	11.22.~11.28.	11.29.~12.5.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22.4명	255.6명	400.1명	487.9명
60세 이상	43.4명	67.4명	85.9명	116.3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8.1명	30.7명	24.3명	26.7명
집단 발생¹⁾ (신규 기준)	37건	45건	37건	15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2.7%	13.1%	14.4%	17.9% (643/3,60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58.1	45.5	41.4	42.9
즉시 가용 중환자실	131개	113개	86개	55개
국사 기장 중단사를	(11.14.9시기준)	(11.21.9시기준)	(11.28.9시기준)	(12.5.9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70%를 넘는 345.3명**으로,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적 편차는 있으나 **경남권 48명**, **충청권 41.1명** 등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9.~12.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45.3명	41.1명	28.6명	14.3명	48명	9.7명	0.9명
60대 이상	85명	9.1명	1.4명	2.7명	14.4명	3.6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 (12.5.9시기준)	20개	2개	2개	6개	14개	5개	6개

- □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 고령층 환자 비율은 높지 않으나 전체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 (12.2.) 101명 → (12.3.) 117명 → (12.4.) 116명 → (12.5.) 121명 → (12.6.) 125명











평생친구

- 정부는 그간 **중환자 병상을 계속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고,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전국 55병상, 수도권** 20병상이 남아 있다.
- 경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60~70%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여력,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은 2.5 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상향을 결정하였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2월 5일(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비상조치를 시행 하고 있다.
 - 주·야간 대면접촉 최소화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 하고, 공공기관은 50% 재택근무 및 시차출근제를 시행한다.
 - 또한, **21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버스 12.5.~, 지하철 12.8.~)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도 확대**한다.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이·미용업,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학원 강사 등 선제 검사를 확대하여 무증상·경증확자를 통한 '조용한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 수능 이후 면접 ·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비하여 격리자 관리 및 대학별 맞춤형 지원 등 대학과 연계한 특별 집중방역을 실시 하고, 대학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 **경기도**는 무증상·경증화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충해 가고 있다. 지난 12월 4일(금) 1개소를 추가 개소하였으며, 현재 총 4개소(1,056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지속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이번 주 내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 한편, 지난 12월 1일부터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PC방 및 노래 연습장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시·군 및 각 시·군 자율방재단이 협력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과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5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89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4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46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12명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325명이 입소**(50%)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2.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 12월 5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3만339개소**, ▲ 유흥시설 4.554개소 등 23개 분야 총 4만263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 붙임 > 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3.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4.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 5.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 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은 집합금지
 -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 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²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괴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괸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홰(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괸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평생친구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 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 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7 H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스탠딩공연장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나서 먼저 4 강다 4면 이의 제회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키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m [°]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m²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 인원 30% 이내로 제한
 -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 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 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8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평생 친구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3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관계부처에서 취합한 시설 개소수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 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대상 시설		개소수	비고	
一下正	네양 시설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17:
합 계		1,305,668	591,765	713,903	
중점관리시설		931,348	415,747	515,601	
	유흥시설 5종	39,458	15,101	24,357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29,618	15,729	13,889	
	실내 스탠딩공연장	144	95	49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9,818	4,417	5,401	
	식당, 카페		380,405	471,90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점, 제과점영업 등
ç	일반관리시설	374,320	176,018	198,302	
	실내체육시설	56,855	28,560	28,295	실외체육시설 포함
	PC방, 오락실	9,529	4,111	5,418	
	결혼식장	985	271	714	
	장례식장	1,204	412	792	장례식장, 봉안시설, 화장장
	학원	125,940	63,065	62,875	교습소 포함
	목욕탕·사우나	6,762	2,023	4,739	목욕장업
	공연장	1,062	553	509	
	영화관		267	302	
	놀이공원	2,713	1,174	1,539	
	워터파크	109	44	65	
	멀티방	609	343	266	DVD방 개소수
	이·미용업	167,681	75,024	92,657	이용업, 미용업
	백화점	302	171	131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의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되고 1단계, 1.5단계,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이 동일함













평생친구

□ 다중이용시설(2.5단계 적용 시 영업이 제한되는 시설)

	수도권	비수도권	
총계	59만 2천개	71만 4천개	
집합 금지	12만 9천개	13만 5천개	
운영 제한 (영업시간/인원제한)	46만 3천개	57만 9천개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제외



- 28 -









붙임4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1.7.~)

(12.5. 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계 적용	12개 광역	-	4개 (세종, 대전, 충북, 충남)	2개 (전북 전 남)	2개 (대구,경북)	2개 (경남 울산)	1개 (강원)	1개 (제주)
2단계	5개 광역	3개 (서울 인천 경기)	-	1개 (광주)	-	1개 (부산)	-	-
적용	17개 기초		4개 (제천, 충주, 천안, 서산)	5개 (순천,군산, 익산, 전주, 완주 _{이서면})	-	4개 (창원,진주, 하동, 김해)	4개 (황천 철원 원주, 춘천)	-

7.4	지'	역	단계조정내용			
구분	권역	시도	7	기간/지역	조치단계	
1		서울	<u>11.24.~12.7.</u>	서울 전지역	2(↑)	
2		경기	11.24.~12.7.	경기 전지역	2(↑)	
3		인천	11.24.~12.7.	인천 전지역	2(↑)	
4		세종	12.1.~12.14.	세종 전지역	1.5(↑)	
5		대전	<u>12.1.~12.14.</u>	대전 전지역	1.5(↑)	
			12.1.~12.14.	충북 일부지역	1.5(↑)	
6	ᄎᇸᄀ	충북	11.28.~12.14.	제천시1)	2(↑)	
	충청권		12.1.~12.14.	충주시	2(↑)	
			12.1.~12.14.	충남 일부지역	1.5(↑)	
7		충남	12.1.~12.7.	천안시	2(↑)	
			12.7~12.13	서산시	2(↑)	
8		광주	12.3.~12.6.	광주 전지역	2(↑)	
			11.23.~별도명령시	전북 일부지역	1.5(↑)	
			11.28.~별도명령시	군산시	2(↑)	
9	÷		11.30.~별도명령시	익산시	2(1)	
	호남권		11.30.~별도명령시	전주시	2(↑)	
			12.1.~12.14	완주군(이서면)	2(↑)	
40			11.24.~12.7.	전남 일부지역	1.5(↑)	
10		전남	 11.20.~별도명령시	순천시	2(↑)	
11	거ㅂ기	대구	12.1.~12.14.	대구 전지역	1.5(↑)	
12	경북권	경북	<u>12.1.~12.14.</u>	경북 전지역	1.5(↑)	
13		부산	12.1.~12.14.	부산 전지역	2(↑)	
14		울산	<u>12.1.~12.14.</u>	울산 전지역	1.5(↑)	
		-		<u>11.26.~12.9.</u>	경남 일부지역	1.5(↑)
	경남권	경남권 경남	11.29.~12.12.	창원시	2(↑)	
15			11.26.~12.9.	진주시	2(↑)	
			11.21.~12.11.	하동시	2(↑)	
			12.6.~12.19.	김해시	2(↑)	
		강원 강원	<u>12.1.~12.14.</u>	강원 일부지역	1.5(↑)	
			12.1.~별도명령시	철원군	2(↑)	
16	강원		12.1.~별도명령시	홍천군	2(†)	
			12.1~12.7.	원주시	2(↑)	
			12.3.~12.14.	춘천시	2(†)	
17	제주	제주	<u>12.1.~12.14.</u>	제주 전지역	1.5(↑)	

1) 충북 제천시는 12.1~12.7까지 3단계에 준하는 조치 시행













평생친구

붙임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느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평생친구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잡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